

1. 개정 이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불법 유통 양상과 신규 보급되는 군수품을 고려하여 단속 대상이 되는 특수군복과 군용장구의 범위를 조정하고 유사군복의 불필요한 구분을 폐지하는 등 현 실정에 맞도록 법령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수군복 단속품목 조정 (안 제2조)

신규 도입한 특수군복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시중에서 거래를 통해 다수 유통되고 있는 바, 판매행위의 빈도가 높은 ‘캠뱃셔츠’ 및 해군의 ‘함상복’을 단속 대상으로 추가 지정함.

나. 군용장구 단속품목 조정 (안 제3조)

‘구급대’와 ‘개인장구요대’가 ‘전투조끼’로 대체됨에 따라 기존의 군용장구는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보급 품목을 추가하여 군용장구의 범위를 조정함.

다. 유사군복의 단속품목 조정 (별표 1)

하계용 전투복을 대체하기 위해 보급한 ‘캠뱃셔츠’와 ‘함상복’과 유사한 복장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유사군복의 단속대상 품목으로 추가함.

라. 제조·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서식 내용 변경 (별지 제1호, 2호 서식)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의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추가에 따른 별지 서식 상 신청인이 제출해야 할 필수 구비서류 등을 보완

마. 별지 서식명칭 수정 (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서식)

각 서식(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서식)의 명칭이 별지 제1, 2호 서식의 명칭과 통일되도록 군복·군용장구를 명시

바. 조사공무원 징표 개선 (별지 제7호 서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2의 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과 제식을 준용하여 조사 공무원증의 제식을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전복”을 “특전복·컴뱃셔츠 및 함상복”으로 한다.

구 분	세 부 품 목
유사군복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계급장, 장성급(將星級) 장교표지 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 컴뱃셔츠, 함상복

제3조의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1. 권총집 2. 구급대 3. 탄입대 4. 개인장구요대

5. 수통 6. 야전삽 7. 반합 8. 천막류 9. 모포 10. 침낭(침낭) 11. 방탄헬멧

12. 방탄복 13. 배낭”을

“1. 권총집 2. 탄입대 3. 수통 4. 야전삽 5. 반합 6. 천막류 7. 모포 8. 침낭

9. 방탄헬멧 10. 방탄복 11. 배낭 12. 전투조끼”로 한다.

별표 제1호 서식을 별표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까지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군복

[]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세부허가 신청품목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 방 부 장 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장의 시설도면 및 시설설명서(단, 제조·판매시설이 여러 곳인 경우, 해당하는 사업장의 시설도면 및 시설설명서를 모두 제출한다) 2. 정관 및 임원명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대표자 증명사진(3×4cm) 1장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명서 4.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 신청에 한한다) 5. 지방세법 제38조에 따른 제조·판매업의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6. 건축물대장 7. 법률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서 교부

신청인

각 군 본부

각 군 본부

각 군 본부

각 군 본부

각 군 본부

[]군복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

허가번호	제 호	허가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영업소	상 호 또 는 법 인 명 칭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성 명				
변경 사유				
영업품목				
변경사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판매업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 방 부 장 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증 2. 대표자 증명사진(3×4cm) 1장 3.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제조·판매업의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4. 법률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대표자 변경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 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증

사진

3cm × 4cm

업 소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생 년 월 일 :

영업품목 :

허가조건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 방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 대장		
허 가 번 호 제 호		허 가 일 자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
법 인	명 칭	
	주 소	(전화:)
	대표자의 성명	
영 업 소 의 상 호		
영 업 소 소 재 지		
영 업 품 목		
영 업 설 비		
변 경 사 항		
변 경 내 용		변 경 일 자

210mm×297mm[백상지(80g/㎡)]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허가번호	제 호	허가일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		
법 인	명 칭			
	주 소	(전화:)		
	대 표 자 성 명			
사 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 방 부 장 관 귀 하

첨부서류	기존 허가증(잃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함)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장부

연 번	연 월 일	품 목	수 량	증 감	재 고	구매자 인적사항				
						성 명	주소 또는 소속	생년월일 또는 군번	계 급	연 령

신 · 구조문대비표

(앞 면)



**부정군수품 단속
조사 공무원증**



사진

3cm × 4cm

성명

국 방 부

81mm×55mm(백상지 150g/㎡)

(뒷 면)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유효기간 :

위 사람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른 부정군수품 단속 조사공무원임을 증명함.

국 방 부 장 관

직인

☎ 02) 748-1882

현행	개정안
제2조(특수군복의 범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이라 함은 야전상의·방한복·비행복 및 특전복을 말한다.	제2조(특수군복의 범위) ----- ----- -----야전상의·방한복·비행복·특전복·کمبەتسەز 및 합상복을 말한다.
제3조(군용장구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권총집 2.구급대 3.탄입대 4.개인 장구요대 5.수통 6.야전삽 7.반합 8.천막류 9.모포 10.침낭 11.방탄 헬멧 12.방탄복 13.배낭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탄입대 3.수통 4.야전삽 5.반합 6.천막류 7.모포 8.침낭 9.방탄헬멧 10.방탄복 11.배낭 12.전투조끼